

日帝下 小作爭議의 性格에 관한 研究

朱 奉 圭*

<目 次>

- I. 問題의 提起
- II. 小作爭議의 發展的 背景
- III. 小作爭議의 性格
- VI. 結 言

I. 問題의 提起

農業問題 가운데 가장 基本的인 것은 土地問題라 하겠으나 土地所有權을 围繞한 小作問題는 가장 오랜 歷史的인 遺產인 同時에 또한 現實的 問題의 代表가 되어 있다.

1910年 韓日合併 以前에 日帝가 東拓을 中心으로 土地集中을敢行하고 그것은 다시 日帝下 土地調查事業過程에서 深刻하게 展開되었다 함은 明白하거나와 그것은 一見하여 大地主의 形成과 더불어 小作農의 增加로 特徵지워졌던 것이다. 이러한 階層分化의 據點은 土地調查事業에 따른 近代的 所有權確立에 있었다 함은 周知의 事實이다.

더욱이 當時의 土地所有關係에 있어서 大地主의 集中度는 日本人에 있어서 相對的으로 높았으며 그들은 흔히 實質的 企業經營의 形態로서 農場運營方式을 取하고 있었다. 물론 小作人은 依然 多數의 韓國人 小作農이었으므로 그들이 가진 政治的 및 經濟的意義는 韓國人 群少地主에 比肩할 바 없이 至大하였다는 事實에 우리는 깊이 注目하게 되며 그들 大地主는 흔히 都市 또는 日本에 居住한 不在地主로서 管理人을 통하여 小作人을 摧取하되 政界나 產業界에 그 威勢를 뻣치고 있었던 人物들이었다는데 우리의 注目對象이 되어 있다.

그리나 土地의 簟併은 事實上 日本人에 限定되어 있지는 않았다. 日帝下 韓國人の 寄生的 大地主 또한 實地에 있어서 많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에 의한 土地併吞의 手法이나 小作農의 支配方式을 보건대 그것이 또한 日本人의 경우와 大同小異하였다. 다만 그후 日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農科大學 農經濟學科 副教授

本帝國主義의 그들에 對한 政治的 및 經濟的 壓迫이 加重됨에 따라서 一方的인 負擔은 不少하였거니와 그의 實質이 即時 小作農에게 轉嫁되었던 事實을 우리는 注視하게 된다. 이리하여 畢竟 土地調查事業以後 이 땅의 大地主와 小作農의 階層分化는 促求되고 小作農의 困苦는 累增된 가운데 土地의 分配狀態는 顯著히 不均等한 曲線을 그릴 수 밖에 없게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日帝下 이 땅의 小作關係는 徹底한 植民主義下 高率의 小作料, 不安定한 小作期間등에 의한 支配를 指目하는 地主主義의 土地制度의 表徵이 되어 있었다. 地主는 當初 恣意로 小作權을 移動하고 無制限하게 土地를 兼併할 수 있었으므로 小作料는 實로 封建的 地代의 再版이라 하여 無妨할 程度의 것이었다.

이에 小作關係를 围繞한 紛爭의 一環으로서 小作爭議는 土地調查事業以後 一部地域의 農民에 의한 高率小作料의 撤廢 및 減免의 要求를 契機로 爆發되 되었고 그것은 어느 局地의 인 地域에서 부터 全國的으로 擴散되었다. 이에 小作爭議는 農民自活運動으로 深刻하게 展開되었으며 民族的 獨立運動으로 마침내 昇華되었다.

本稿의 目的是 小作生產關係를 围繞한 紛爭으로서 慾起된 小作爭議의 性格의인 特徵을 解明함으로써 小作爭議에 관한 歷史的 意義를 定立함에 있다.

II. 小作爭議의 發展의 背景

1910年 韓日合併 以前에 日帝가 東洋拓殖株式會社를 中心으로 土地集中을敢行하고 東拓이 곧 日帝의 土地集中에 대한 하나의 據點의인 役割을 다하였다 함은 周知의 事實이거니와 그것은 다시 土地調查事業過程에서 顯著하게 展開되었다. 그리하여 土地調查事業은 一見하여 極少數의 大地主形成과 더불어 大多數의 小作農의 擴大的 增加로 特徵화되었다.

이렇게 볼 때 階層分化의 據點은 土地調查事業施行에 의한 近代的 所有權確立에서 비롯된 것이거니와 膨大한 土地없는 農民의 大量的 存在는 近代的 土地私有制의 確立이 前封建社會의 支配階級인 收租權者의 利益에 있어서 實踐되었다는 事實에 깊이 聯繫되어 있다. 즉 現實的 保有者이며 耕作者인 農民을 所有權者라 認定한 것이 아니라 權勢家의 收租權者를 所有權者라 認定하였다는 事實에서이다. 그 밖에도 大規模의 日本資本의 土地에로의 農業的投資, 農村經濟의 貨幣化, 따라서 農民經濟生活의 資本에로의 從屬, 租稅制度의 影響等等의 原因에 의하여 土地離脫의 契機가 造成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農民의 大部分은近代的인 契約小作人の 地位를 獲得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土地調查事業은 그것이 封建體制의 解體에 隨作하여 要求된 近代的 土地所有權의 確立을 이 땅에 가져 왔던 것이고 더욱 韓國資本主義進行의 基礎를樹立한 劃期的인 契機가 되었다 함은 여기에 說明할 나위도 없거니와 그가 가져온 社會經濟的 意義는 小農의 生產條件에 관한 限, 深刻한 範圍에 걸친 것이었음이 分明하다. 그 가운데 그것은 小作問題에 대하여 하나의 始發點을 形成하였다 하여 결코 過言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傳來의 인 收租權者의 土地支配力이 그대로 近代의 所有權으로 認定되는 反面 耕作農民의 安定性이 剝奪된 結果에서 明白하다. 地主는 以後 自由로 自己土地를 處分하고 排他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데 대하여 耕作農民은 封建的 어떠한 權益의 主張도 容認되지 않은채 近代的 小作農으로 轉落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日帝下 土地調查事業이 土地의 私有制度를 認定하고 그 權利를 公認한 것⁽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하여 傳來의 收奪의 所產인 耕作農民들의 土地 그리고 특히 非法的 外國人 土地의支配權을 그대로 近代的 所有權으로 認定한 것인가에는 많은 疑問點을 낳게 되었던 것이 事實이다. 그들이 設令 近代的 所有權에 類似한 權利를 行使하고 있었다 하여 또는 그들의 社會的 勢力이 壓倒的으로 耕作農民들을 凌駕하였다 하여 혹은 先進各國의 封建制解體過程⁽²⁾에 있어서 이와 類似한 方式을 取한 바 있다 하여도 우리에 있어서 問題의合理性이 萬人에게 簡單히 首肯되어 있지 않고 있다.⁽³⁾ 그리하여 이에 尋常고도 深刻한 小作問題에 逢着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의 그 後의 事情은 이를 證左하는 結果가 되어 있는 것이 事實이다.

모름지기 土地以外에 아무런 經濟的 土臺를 가지지 못한 이 나라의 農民은 다시 地主에게

(1) 和田一郎, 「朝鮮の土地制度及地稅制度調査報告」 1920, pp. 75-76.

(2) 朴文圭, 「農村社會分化の起點としての土地調查事業について」(京城帝大法文學會, 「朝鮮社會經濟史研究」 1933)는 收租權者의 歷史的性格과 耕作農民의 封建的耕作權의 存在를 土地調查事業의不合理性과 關聯하여 體系적으로 論述하고 있다.

(3) 資本主義의 成立과 더불어 形成된 主要各國의 土地所有類型을 概觀하면 다음과 같다.

① 英國型 : 이는 最大限으로 集中된 封建的 土地支配關係로부터 直接的으로 變革發展된 가장 典型的인 資本主義生產樣式(企業的生產樣式)의 形成인 同時に 小土地所有의 完全廢棄를 가져왔다.

② 獨逸型 : 東西 두가지 類型으로 區分되는데 엘베江 以東의 프리시아에 있어서의 封建的 大土地所有 및 그의 巨大農場으로부터 直接發展된 土地貴族의 資本家의 大經營(용질)이 없지 않은 同時に 獨立生產者로서의 零細農民이 累積되어 있다. 이에 對하여 西北獨逸에 있어서는 中小農이 오히려 優勢한 것이었다. 그러나 어느 것이나 英國에서와 같은 土地所有와 農業經營과의 完全한 分離는 보자 못하였으므로 全體的으로 보아 小農支配形態이다.

③ 佛蘭西型 :一般的으로 封建的 土地所有와 關係없이 革命으로서 封建制가 破壞된 다음에 새로이 分與된 分割地(小土地)所有農民型이 이것이다. 즉 農民은 1789年の 大革命에 의하여 即刻 封建體制를 부터解放되고 領主의 大土地의 解體로 因한 分割地의 分與로 獨立自營農化하였다.

④ 美國型 : 封建的 關係의 歷史的 基礎없이 土人으로부터 奪取한 土地의 植民의 所有形態이고 그 가운데 英國式 資本主義의 生產樣式을 볼 수 있다.

經濟的으로 從屬되지 않을 수 없었다. 萬若 耕作權으로부터 追放된 農民을 包容할만한 經濟의 基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다면 地主와 農民間에는 對等한 立場에서 耕作契約이 成立될 수 있었으리라 보게 되는 것이나 그러나當時의 社會經濟的 與件은 오히려 이와는逆行된 狀態에 있으므로써 여기에서는 土地所有關係는 封建的 傳統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土地調查事業以後의 土地兼併은 顯著化되었으며 土着地主를 비롯한 日本人 大資本地主의 形成을 보게 되었다. 特히 東洋拓殖株式會社와 같은 支配的 獨占金融資本의 直接的인 營農方式은 구태여 말할 것도 없고 日本人系 農場에 있어서 그들의 企業農的 主體性은 차음부터 分明한 것이었다. 그들은 土着小作農을 傳來의 生產形態로 둑어놓고 自己利潤의 最大限 獲得을企圖하였으며 小作農에 對한 支配力은 土着地主에 比하여 苛酷한 것이었다. 苛酷한 小作條件 밑에서 高率의 小作料는 물론 小作料 以外의 支配組織下에서 小作農民의 多大한 犠牲을 強要하였다.⁽⁴⁾

따라서 土地調查事業以後의 韓國에 있어서의 土地所有는 한개의 異型을 形成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日人 土地所有의 顯著한 樣相은 土地所有 그것이 舊來의 韓國人 地主의 경우에 比해서 더 한층 苛酷하고도 巨大한 規模로 集中되었다는 事實을 發見할 수 있게 된다.

日帝下 土地調查事業이 完了된 以後 즉 1919年에 100町步 以上的 地主數 681名 가운데 韓國人の 土着地主數는 360名이고 日本人地主는 321名이었으나 年次를 거듭함에 따라서 그總數爻도 增加되어 1933年에 이르러 716名에 達하여 있으나 韓國人地主는 減少되며 反面에 日人地主는 游增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同一하게 200町步 以上的 地主構成에 있어서도 1919年の 韓國人地主數는 186名이고 日人地主는 169名이었으나 1933年에 이르러서는 韓國人地主는 49名으로 激減된 反面에 日人地主는 181名으로 激增되어 있는 事實을 볼 수 있다(表 1 參照).

위에서 日本人 大地主의 形成을 뚜렷이 볼 수 있거니와 이들 日人 巨大地主들은 舊來의 封建的인 小作制度와 其他一切의 封建的 또는 高利貸의 收取關係를 더욱 組織的으로 強化하여 그 支配下의 小作農民들을 어느 나라에서도 類例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苛酷하게 收取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日帝下 土地調查事業 以後 日本人 大資本의 土地兼併이 急激化되는 가운데 그들의 小作農民에 대한 苛酷한 收奪은 너무나도 뚜렷한 事實로 되어 있었거니와 이때에 日人 巨大地主중에는 새로 來渡한 土地投資家도 적지 않지만 現地의 御用商人이나 產業資本家

(4) 久間健一, 「朝鮮農業の近代的様相」, 1933, p.53.

〈表 1〉 韓・日人別 大地主比較

區 分	年 度								
		1921	1923	1925	1927	1929	1931	1933	
百町步以上	韓 國 人	360	333	344	290	340	319	308	315
	日 本 人	321	289	360	361	361	361	406	363
	其 他	—	—	—	—	2	2	2	3
	計	681	622	704	651	703	682	716	681
二百町步以上	韓 國 人	166	67	45	45	40	49	43	43
	日 本 人	169	178	170	192	172	187	192	182
	其 他	—	—	—	—	—	—	—	—
	計	235	245	215	237	212	236	235	227

資料：朝鮮農會，「朝鮮農業發達史」（發達編）1944，附錄 第4表。

로서自身의 基幹資本의 安全을 圖謀하는 補完策으로서 一般 韓人地主의 經濟的 弱點에 便乘하기도 하였고 開墾 및 干拓地의 特惠의 拂下에 依存한 事例 또한 頻繁하였으며 產米增殖計劃에 따른 水利施設 等等이 흔히 日本人 大地主에 의한 土地兼併의 促進劑로 作用케 된 條件이 되었던 것도 事實이다.

무엇보다도 水利組合費의 過重負擔과 米價低落의 狹攻을 落아서 經濟力이 貧弱한 朝鮮人の 中小 土地所有者는 土地를 損失하고 没落하였다라는 論評⁽⁵⁾에서 그와 같은 事實을 찾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過程에 土着地主의 資本家的 打算性은 크게 促求되었으니 日本人 大地主의 增加趨勢는 바로 이 땅의 植民地農業政策의 進度를 反映하는 同時に 階層・分化過程을 促求하는 徵兆가 되었다.

〈表 2〉 民族別 大地主動態(1921~1927年)

規模別	50町步以上		70町步以上		120町步以上		150町步以上		200町步以上	
	韓 人	日 人	韓 人	日 人	韓 人	日 人	韓 人	日 人	韓 人	日 人
1921	1,087	273	563	246	266	213	94	108	66	169
1922	911	271	450	258	189	199	76	105	62	176
1923	927	308	456	286	217	220	72	113	67	178
1924	1,007	318	500	296	237	228	71	126	48	167
1925	950	360	557	299	270	230	74	130	45	170
1926	1,109	376	580	300	229	245	96	121	66	177
1927	329	1,091	385	526	298	210	239	80	45	192

資料：津曲藏之丞，「朝鮮に於ける小作問題の發達過程」（京城帝大法文學會，「朝鮮經濟の研究」，1929，所收），p. 359.

勿論 階級制度의近代化에 따라서大小地主의 土地에 대한 關心度는 더욱 높아지기 마련인 것이나 日帝下 土地調查事業 以後에 있어서 大體로 小作農의支配力이 強한 日本人系 地

(5) 淩田喬二，「日本帝國主義と舊植民地地主制」1968, pp. 104-5.

主是 第一型이라 하고 土着韓人地主를 第二型이라 하여兩者를 確然히 区分하는 見解가 있었다는 事實에서도 地主의 性格을 充分히 알 수 있게 된다. 즉 第一의 型은 이를 農場式 또는 合理的 經營의 樣式이라고 稱할 수 있는 것으로서 個人名義 또는 會社組織下에 多數의 事務 또는 技術의 職員을 雇傭하여 數十町步 내지 數千町步의 耕地를 小作에 附하고 加장 進步된 組織化와 技術化를 行하여 合理的으로 企業化한 體制이다. 此種의 經營主는 그 數 200餘로서 經營面積은 55萬町步에 達한다. 그리하여 經營의 主體는 日本人에 많고 朝鮮人에 적다. 農場式經營의 特質은 多數小作人에 對하여 經營上의 資金을 貸付하고 小作人の 生計를 保證하며 耕地의 利用增進上 土地改良事業을 促進하고 따라서 土地의 生產力を 急激히 增進시키고 公益事業에 대하여 各種의 貢獻을 하는 同朝鮮農業은 물론 文化의 開發促進上 寄與한 바 實로 적지 않다. 朝鮮米作地帶의 農業이 이들 企業的 農業의 投資와 堅實하고 合理的인 經營의 結果로서 놀랄 만한 進步發達을 보기에 이른 過去의 實績을 돌아 보아 觀察하면 分明하다.

第二型에 屬한 地主는 朝鮮人側에 많고 스스로 都市에 居住하며 耕地의 所在地方에는 代理人, 舍晉을 두고 小作自體는 自作으로 生產에 從屬시키며 따라서 分配量도 舊態依然함과 같은 經營이다. 即 第一型에 比하여 舊式이고 不合理한 經營이다.⁽⁶⁾

여기에 第一型의 地主에 對應한 第二型의 地主를 封建地主로 보는 見解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土着地主로서 이른바 第二型의 地主라 할지라도 東洋拓殖株式會社 그 밖에 日本人大資本地主의 影響을 받아서 同一한 性格으로 變形되었다⁽⁷⁾는 見解가 있고 보면 日帝下地主의 性格은 一旦 外形的으로는 第一型 및 第二型의 區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實質은 殖民地開發政策이 가져온 支配資本의 發展的인 壓力에 따라서 資本家的 打算性을 促求하는 局面의 것이었으며 그를 具顯기 위한 手段으로서 小作料의 高率化를 期하는 것으로 一貫하였다고 볼 수 있게 된다.

모름지기 日帝下 土地調查事業 前後에 있어서 地主와 小作人の 動態를 살펴보면 地主의 累增에 對應하여 自作農의 減少에 따른 小作 및 小作農의 減少傾向을 뚜렷이 볼 수 있다. 小作 및 小作農의 合計로서 나타난 總體的 比率은 實로 76~77%이라는 놀라운 壓倒的인 優勢의 數字에 달하여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地主의 增加에 對應한 小作農의 增加樣相은 바로 小作生產關係의 徵兆가 되어 있거니와 그려는 가운데 地主의 小作農에 대한 小作料의 高率化傾向은 始終 發展的으로 形成 展開되고 있었다. 이것은 封建的 支配條件의 所產이 아니라 日帝下 殖民地開發政策이

(6) 鈴木武雄, 「朝鮮の經濟」1942, pp. 262-263.

(7) 李碧朶, 「朝鮮小作問題」(雜誌『朝鮮農民』第3卷, 第11號), p. 238.

〈表 4〉 地主 및 自小作 階層動態(單位: 千戶)

年 度	總 計	地 主	自 作	自小作	小 作	比 率			
						地 主	自 作	自小作	小 作
1913	2,573	81	586	834	1,072	3.1	22.8	32.4	41.7
1918	2,652	82	523	1,044	1,004	3.1	19.7	39.4	37.7
1919~22	2,701	93	529	1,020	1,059	3.4	19.5	37.8	39.3
1923~25	2,718	102	533	944	1,139	3.8	19.6	34.7	41.9

資料：朝鮮農會，「朝鮮農業發達史」(發達篇) 1944, 附錄 第3表

가져온 結果라는 點에 크게 注目하게 된다. 그렇다 하여 우리는 여기에 單純히 小作料의 名目的인 數量이나 또는 賭地, 打租, 執租等 小作料의 納付方式이나 그들에 關한 分配率만을 볼 것이 아니라 實物의 運搬費 및 包裝費등의 附隨의 支出이나 그 밖에 强要된 地代의 負擔을 빼침없이 보는 것도 重要하다 하겠다.例전대 小作人의 家事勞役 土地改良費 公課負擔등의 條件等을 考慮하여 살펴 보는 姿勢가 重要하고 또한 여기서一律的으로 小作料라 하지만 地主의 實地 受納하는 現物 또는 現金에는 小作料 以外에 위의 附隨의 諸負擔이 小作人에 대하여 賦課되는 肅重性을 發見하게 된다. 더욱이 地主의 土地兼併이 進行됨에 따라서 舍音 등 中間掠取者의 収取關係 또한 加重的으로 普遍化되어 있었다는 點에 小作生產關係上에 問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日帝下 土地調查事業 以後 小作料의 急速한 上昇은 말할 것도 없으며 小作慣行의 變化를 가져온 主要因으로 當局이 調查한 바 「功利的 地主의 出現에 의하여 小作料는 高騰하여지고 있다」⁽⁸⁾는 文面을 우리는 바로 1922年的 報告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음의 調查例는 바로 위와 같은 小作生產關係의 事實을 裏證하는 것이라는 點에서 注目的 對象이 되어 있다.

〈表 5〉 審小作料와 賃價對比(全羅北道)

區 分	小 作 料		正 租 價 格		小作料實騰率
	金 額	指 數	價 格	指 數	
1911	4.00圓	100	4.00	100	100
1916	6.50	163	5.00	125	130
1918	14.00	350	9.00	225	157
1921	24.00	600	16.00	400	150

資料：朝鮮農會，「朝鮮の小作慣行」(時代と慣行) 1930, p. 415

물론 小作慣例는 現物地代가支配的이었던 것이며 現物地代는 從來의 傳統에 따라 決定

(8) 朝鮮農會，「朝鮮の小作慣行」(時代と慣行) 1930, p. 494.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執租 打租 및 定租의 形態⁽⁹⁾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다.

執租(檢見法, 看坪法)

執租은 每年 收穫期時에 地主側와 小作人의 立會下에 立毛作物을 檢見하고 收穫推定量을 算出하여 이것을 基準小作料로서 協定하는 方法으로서 이것이 封建的 現物地代發展의 原始的인 段階를 代表하는 것이 되었던 것이다 이 경우에 小作料는 實收穫量의 50%내지 80%가 되는 것이다. 執租法에 의하는 경우에는 普通 地稅는 地主와 小作人이 共同으로 負擔하며 種子 및 金肥代는 小作人の 負擔이 되고 있었다.

打租法(打作法, 刈分法)

打租法은 作物을 收穫, 脫穀 및 調製한 率에 地主와 小作人이 立會하여 既定小作料에 應하여 分配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既定小作料는 半作이 普通이 있다. 打租法의 경우에는 地稅, 運搬費, 肥料등은 小作人이 負擔하며 따라서 小作料는 30~79%에 達하고 있었다. 이는 執租法으로부터 發展推移한 封建的 現物地代의 第二 發展段階의 것이다.

定租法(賭只法, 賭作法)

定租法은 地主와 小作人이 小作契 當時에 定하는 小作料를 收穫成績如何를 不問하고 收穫時에 小作人이 納付하여야 되는 것이며 種子 肥料는 대체로 小作人の 負擔이며 小作料는

〈表 5〉 畜에 있어서 小作料收得率 比較

(單位 : %)

道名	定租			打租			執租		
	最高	普通	最低	最高	普通	最低	最高	普通	最低
京畿	90	50	25	70	54	40	80	50	30
忠北	73	50	20	50	50	30	75	50	35
忠南	60	49	39	52	51	44	65	51	44
全北	80	45	30	70	50	30	80	50	30
全南	70	50	30	70	50	40	70	55	30
慶北	80	50	23	65	50	30	80	55	30
慶南	65	51	38	57	45	43	69	52	43
黃海	65	40	—	70	60	40	70	55	45
平南	75	45	30	—	50	—	68	50	30
平北	70	45	20	50	50	50	70	55	50
江原	70	49	30	60	50	40	70	50	40
咸南	60	48	30	60	50	35	60	51	40
咸北	58	47	36	59	50	43	50	50	50
最低	58	40	20	55	45	30	50	50	50
最高	90	51	39	79	60	44	80	55	50

資料：朝鮮總督府農林局、「朝鮮に於ける小作に関する参考事項摘要」1933。

(9) 朝鮮農會, 「朝鮮の小作慣行」(時代と慣行) 1930, pp. 273-4.

〈表 6〉 田에 있어서 小作料收得率 比較

(單位 : %)

項 目 道 名	定 租			打 租			執 租		
	最 高	普 通	最 低	最 高	普 通	最 低	最 高	普 通	最 低
京 鐵	82	50	15	60	50	34	75	50	10
忠 北	71	40	3	50	50	30	75	50	40
忠 南	55	44	35	52	49	43	56	51	44
全 北	70	40	10	60	50	30	64	55	50
全 南	60	40	20	65	50	30	75	55	20
慶 北	80	45	20	65	50	30	75	50	20
慶 南	61	45	30	54	49	43	67	48	39
黃 海	60	35	—	65	60	37	65	50	40
平 南	74	45	30	—	50	—	47	40	30
平 北	70	45	20	50	50	23	—	—	—
江 原	70	47	47	60	50	20	65	50	40
咸 南	66	43	20	60	50	35	57	50	40
咸 北	56	44	33	59	—	42	—	—	—
最 低	55	35	3	50	49	20	47	40	10
最 高	80	50	47	65	69	43	75	55	50

資料：朝鮮總督府農林局、「朝鮮に於ける小作に關する参考事項摘要」1933.

20~90%이란 最高率에 達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打租法의 發展形態인 定地法은 現物地代의 最後段階를 代表하는 것이다.

이렇듯 小作慣例는 執租, 打租 및 定租의 三種으로 區別되어 있었으나 小作料의 標準은 何者든지 半分의 標準이 普通이며 小作人이 小作料 以外에도 여러가지의 二重負擔을 强要當하고 있었다. 물론 現物地代의 세 가지 収取方法中 最後의 發展形態인 定租法이 田畠을 莫論하고 當然히 優勢化하는 것이었다. 다음의 統計는 이 優勢化의 事實과 그것의 必然的인 傾向을 대체로 明白하게 나타내고 있는一面의 것임에 틀림 없다.

이와 같이 1930年代의 調査에 의하여 各道別로 整理된 支拂方式 즉 執租 打租 및 定租別의 小作料에 관한 最高 普通 및 最低率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그로부터 엄청난 小作料의 高率性에 弊病을 禁止할 길이 없으며 이러한 高率의 小作料와 農民收取속에서 小作爭議의 社會經濟的인 提起는 하나의 必然的인 所屬으로서 이룩되었다고 볼 수 있게 된다(表 7).

모름지기 封建的 現物地代의 存續 強化와 打租 執租 및 定租화에 隨伴하는 小作料의 高度化는 封建的 生產樣式의 深化와 더불어 土地의 瘦薄化를 自招케 한 結果가 되기도 하였다. 換言하여 封建的 高率地代는 農業經營費의 不斷의 減縮과 生產技術의 硬化를 前提로 하고 그것은 小作人에 의한 土地의 自然的 肥沃度의 掠奪에 隨伴하는 土地의 逐次的 瘦薄

〈表 7〉 小作料率比較

(單位: %)

區 分	畠			田		
	最 高	普 通	最 低	最 高	普 通	最 低
定 租	90	51	39	80	50	47
打 租	79	60	44	65	69	43
執 租	80	55	50	75	55	50

資料：朝鮮總督府農林局，「朝鮮に於ける小作に關する参考事項摘要」1933.

化를 招來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더우이 이들 小作料의 算定方式은 어느 것이나 대체로 地主의 一方的 便宜에 의하여 選擇되고 있었던 小作料 徵收額의 決定方式이였다는 데 그의 特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더하여 이들이 대개 不在地主의 現地管理人인 舍音⁽¹⁰⁾의 作況調查에 의한 評價方式에 依存하였던 것이고 그것은 一般의 料率에 舍音의 挑雜을 添加한 것이 될 수 밖에 없었다.

舍音은 다름 아닌 不在地主의 土地管理者이며 小作人の 中間搾取者的인 存在이었다. 그들은 때때로 地主를 篲絡하기도 하였지만 地主의 威勢를 떨어서 奇妙한 方法으로 小作人을 弄奸함이一般的이었다. 大體로 日帝下 地主에 對한 그들의 共通의인 任務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 (1) 地主의 代理者로서 小作農을 監督
- (2) 小作料의 策定과 檢收
- (3) 小作權의 移動(小作人の 指名)
- (4) 小作人과 地主間의 諸負擔調整
- (5) 土地改良에 관한 地主 小作人間의 連絡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條項은 대체로 副次의인 것에 不過하였고 舍音의 終局의인 使命인즉 오로지 地主의 期待한 바 一定한 小作料를 遺漏없이 確保하려 함에 있었고 이 밖에 地主의 經濟的 또는 社會的인 慾求를 小作人을 통하여 가장 忠實히 履行케 함에 달려 있었으나 그들이 敢行한 行性와 作奸은 惡德地主의 所行을 훨씬 凌駕한 것이었으나 이들의 小作料 中間搾取量은 極度에 達하여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日帝下의 小作關係를 살펴 보건대 우선 이 땅의 小作料率은 不斷히 騰貴하여 特

(10) 舍音은 오랜 歷史的인 存在로서 李朝中葉 以前에 일찌기 地主의 代理人으로서 存在하였다라는 것은 文獻上 明白하다. 다만 그의 社會的 性格은 時代에 따라서 반드시 同一하다 할 수 없을 뿐이다. 참고로 「與猶堂全書」에 「肅宗 庚申(1675) 十月 召府王堂官領中樞府事宋時烈 同人講西銘 大臣宗子之家相 時烈曰家相如俗稱舍音」이라 한 記錄이 있다. 舍音에는 地主의 大小에 따라서 여리 가지가 있었고 하나의 大舍音下에 「反舍音」 또는 여려 「小舍音」이 있었다.

〈表 8〉 舍音의 數 및 一人管理의 土地面積 및 小作人數(1922年)

道 名	舍 音 數		一 人 管 理 土 地 面 積			小 作 人 數		
	韓 人	日 人	最 高	普 通	最 少	最 高	普 通	最 少
京 縣	4,591	6	300.0	20.0	1~2.0	600	50	5~6
忠 北	4,143	—	100.0	12.0	0.5	587	20	3
忠 南	2,169	126	500.0	17.2	1.0	900	50	5
全 北	2,952	22	500.0	50.0	1.0	—	—	—
全 南	3,496	—	300.0	20.0	3.0	—	—	—
慶 北	2,270	—	447.0	20.0	1.0	103	5~60	10
慶 南	2,655	19	150.0	70.0	2.0	100	15	5
黃 海	1,000	13	420.0	143.0	3.0	220	54	13
平 南	60	—	100.0	平均38.0	10.0	300	平均74	15
平 北	172	—	100.0	平均20.0	5.0	35	平均10	5
江 原	360	5	429.0	平均25.0	1.0	450	50	10
咸 南	3	2	81.0	平均43.0	10.0	—	—	—
咸 北	—	—	—	—	—	—	—	—

資料：朝鮮農會, 「朝鮮の小作慣行」(時代と慣行) 1930, pp. 481-2.

殊한 恐慌期를 除外하고서는 그것은 土地收益率을 크게 올렸다.⁽¹¹⁾ 이에 더하여 이른바 小作料 아닌 小作료로서의 公課負擔을充分히勘案할 때 地主의 收益率은 一般의 資本投資에 내리지 않았던 水準이었고 이러한 土地收益率은畢竟 地價를 또한 昂騰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더욱 나아가서 小作料 謄貴의 惡循環的 要因이 아니었다면 農業投資를 制約하는 要因이 될 수 밖에 없었고 이點 農業生產力의 沈滯性이 持續되고 小作爭議問題의 激成이 있게 되는 基礎的 條件이 되었던 것이다.

아래의 表 12에 비추어 본 바 田畠을 通하여 投資收益率은 대체로 年 10% 内外임을 알 수 있으나 이 때에 土地價格은 謄貴過程에 있었다는 것換言하면 地主는 本來 低廉한 價格으로 土地를 簈併하였다라는 事實을勘案할 때 實質的인 收益率은 훨씬 높았다고 보아야 하고

〈表 9〉 舍音其他管理者數

道別 年度	京畿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黃海	平南	平北	江原	咸南	咸北	計
1934	13,360	3,429	8,294	6,698	6,684	5,230	6,648	5,226	917	1,265	2,201	213	127	60,300
1935	16,890	3,953	9,345	6,472	6,846	5,474	7,187	5,512	950	1,293	2,327	238	137	66,624
1936	17,260	4,193	9,628	6,535	7,301	5,832	7,171	5,610	993	1,291	2,459	246	145	68,664
1937	16,768	4,341	9,349	6,853	7,642	6,114	6,908	5,646	1,204	1,266	2,531	254	147	69,023
1938	16,931	4,454	9,619	7,140	8,010	6,535	7,136	5,782	1,277	1,268	2,599	267	177	71,195
1939	17,163	4,523	9,580	7,326	8,110	6,630	7,154	5,770	962	1,274	2,648	264	180	71,584

資料：朝鮮總督府 農林局, 「朝鮮農地年報」第一輯 1940, p. 91.

(11) 朝鮮總督府 農林局, 「朝鮮に於ける小作に關する参考事項摘要」1933.

〈表 10〉 舍音管理小作地面積

(単位:町歩)

道別 年度	京畿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1934	189,248.3	35,338.6	200,465.2	124,052.2	217,915.5	64,716.8	105,230.9
1935	198,925.4	37,024.9	97,165.8	115,718.1	133,328.8	66,127.1	104,563.9
1936	207,224.4	40,008.2	100,749.7	116,925.1	147,780.4	72,775.7	89,437.4
1937	202,080.4	42,530.6	100,664.1	125,235.5	163,167.4	101,291.0	69,256.3
1938	207,295.2	45,000.4	105,952.0	130,381.5	174,295.9	127,265.2	72,915.1
1939	217,073.4	47,888.7	110,801.0	137,431.1	156,082.9	130,200.2	75,468.1
	黃海	平南	平北	江原	咸南	咸北	計
1934	351,068.8	21,654.4	23,592.3	39,128.6	4,485.0	2,212.0	1,379,143.0
1935	179,375.1	20,516.4	24,126.0	40,298.3	5,826.7	2,418.6	1,025,115.1
1936	186,697.6	20,445.8	22,658.0	42,649.8	8,438.9	2,613.8	1,058,414.8
1937	190,912.3	23,425.7	22,294.8	47,531.9	9,086.6	2,128.6	1,099,595.2
1938	197,630.6	23,513.7	23,128.8	49,632.8	9,531.0	2,301.6	1,168,683.8
1939	155,813.6	20,435.7	23,340.4	51,190.1	8,845.3	2,402.1	1,136,972.6

資料：朝鮮總督府 農林局、「朝鮮農地年報」第一輯 1940, p. 92.

〈表 11〉 小作別 土地收益率(畠)(1922年)

道別	定租	打租	執租	區分		定租	打租	執租
				道別	區分			
京畿	8.5	10.0	9.8	黃海	8.4	9.7	9.1	
忠北	13.5	13.8	5.8	平南	7.0	9.0	9.0	
忠南	10.7	11.7	11.6	平北	9.9	10.0	—	
全北	5.6	5.6	5.6	江原	12.0	13.0	14.0	
全南	10.0	15.0	12.5	咸興郡 永興郡 安邊郡 北青郡	10.0	11.3	—	
(達城郡)	8.5	7.5	8.2		10.0	8.0	15.0	
慶北	20.0	18.0	21.0		7.0	7.0	7.0	
(慶州郡)	75.0	—	14.0		50.0	6.0	—	
慶南	10.4	9.5	12.2	咸北	—	7.6	—	

資料：朝鮮農會、「朝鮮の小作慣行」(時代と慣行) 1930, pp. 412-3.

한편 이를 그대로當時의 朝鮮主要株式利率에 比한다 하여도 越等히 高率이었다는 計算에서 土地收益率이 높은 水準에서 堅持되어 있었다는 事實을 알 수 있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事例는 地主가 支配資本의 分岐가 있을 때 또는 寄生地主가 小作農을 一般以上으로 苛酷하게 収取하였을 때에 事實上 畦田收益率은 一般의 主要株式利率을 超過하여 確保되어 있었다는 事實에서 明若觀火하다 할 수 있다(表 12参照).

이러한 狀況과 小作條件의 極端的인 不合理속에서 小作農民의 悲鳴은 高潮되어 갔으며 그것은 미침내 小作爭議로 昇華되었다. 이에 小作爭議는 小作料 減免을 비롯한 모든 小作條件를 要求하며 그를 貫徹기 위한 運動展開로서 實質化되었다.

〈表 12〉 畜田利率狀況

(單位:割)

年 度	畜 利 率	田 利 率	朝 鮸 主 要 株 式 利 率	年 度	畜 利 率	田 利 率	朝 鮸 主 要 株 式 利 率
1928	0.87	0.92	—	1933	0.85	0.90	0.64
1929	0.82	0.88	0.71	1934	0.83	0.87	0.60
1930	0.84	0.92	0.73	1935	0.85	0.92	0.64
1931	0.77	0.83	0.69	1936	0.82	0.82	0.65
1932	0.88	0.95	0.70				

資料：朝鮮農會，「朝鮮農業發達史」（發達編）1944, pp. 593-4.

이에 日帝自體는 唐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小作爭議의 根本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諸方案을 講究한 바 있었으나 그 가운데 1927年度에 全國 各道에 걸쳐 6百戶의 自作農을 創設키로 하는 所謂 自作農創設事業計劃과 同年 12月에 小作爭議調停令을 發表하였고 1928年 3月에는 臨時小作 調査委員會를 設置하고 小作慣行의 改革案을 計劃樹立한 바 있었다. 즉 1) 書面契約의 勸獎 2) 小作料引上 및 小作權移動의 制限 3) 小作地轉貸의 制限 4) 持續的小作의 勸獎 5) 小作權相續의 保障 6) 小作料滯納에 대한 猶豫勸獎 7) 定額小作制의 實施獎勵 8) 小作料運搬費負擔의 調整 9) 公定小作料의 策定 10) 舍音의 弊害 防止 등 등의 方策이 있었으나 事實上 즉 이것은 法的措置를 取한 것이 아니라 一片의 通牒에 依據한 手法이었다. 따라서 當初부터 實効를 거두기 困難하였던 方法이며 그후 各道에 小作官을 配置하여 小作紛糾의 調停을 專擔시키는 方案을 追加하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하나의 糊塗策에 不過하였다.

이리하여 위의 法的措置나 方案講究로써 小作爭議의 原因을 莫除하고 事態를 根本의 으로 求할 수는 到底히 없었던 것이다.

III. 小作爭議의 性格

日帝下 小作生產關係에 있어서 重要問題는 高率의 小作料에 集約되어 있었거나와 그러한 가운데 小作人은 事實上 被支配的인 樣相에 있었던 것이며 이 小作料 以外에도 여러가지 小作慣習이 不利하게 展開되어 있었다. 이 小作慣行中 우선 重要한 하나는 小作期間의 問題가 되어 있었다. 地主와 親戚關係를 갖는 小作이라든가 또는 果樹園等을 經營하는 小作人の 極히例外적인 경우를 除外하고서는 小作期間은 1年이 通例가 되어 있었고 이 1個年間을 小作期間으로 하는 比重은 全體의 70%를 上廻하는 것이었다.

小作期間의 短期化는 小作權移動의 直接的인 契機가 되었던 것이며 小作權移動은 小作人間에 小作權爭奪을 不斷히 激化시킨 바 있었고 그라는 가운데 地主는 극히 有利한 小作契約이 可能하였고 그를 통하여 小作人을 收取하였다. 그리하여 小作人の 生活狀態는 極度로

〈表 13〉 小作期間의 樣態

項	目	1年間	2~3	4~5	6~8	9~10	11~15	16~30	30年以上
地主	畠	20	1	1	—	—	—	—	—
	田	3	1	—	—	—	—	4	—
自作兼小作	畠	116	23	8	1	1	1	4	—
	田	41	1	3	1	6	1	—	—
小作	畠	110	24	17	1	2	1	7	—
	田	34	9	16	1	1	2	—	—
	菜園	13	—	4	—	—	—	—	—
計		327	59	49	4	10	5	11	—

資料：朝鮮銀行，「調査月報」第3卷 第4号 第6號

悲慘한 狀態에 達하게 되었으나 世變俗移하여 個人主義과 資本主義가 우리 社會에 澄湃함에 따라 地主對小作人關係는 經濟的인 爭奪을 위한 角逐的인 事態로 變하고 말았던 것이며 이것이 所謂 小作爭議로 發展케 되었다.

이와 같은 小作爭議는 慶尙道 全羅道의 一部地域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그 후 漸次 全國에 蔓延하였고 그 内容 또한 적지 않아 深刻하게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 原因別 動態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1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小作期間의 短期化에 따른 小作權 移動의 反對가 小作爭議의 最大原因이 되어 있고 그밖에 高率小作料에 따른 小作料의 低減要求가 小作爭議의 中心이 되어 있어 結局 小作爭議의 原因別 内容가운데 그의 焦點은 小作權 移動關係 그리고 小作料의 高率性에 有機的으로 關聯을 갖고 있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表 14〉 道別小作爭議累年表

區別 年度	京畿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黃海	平南	平北	江原	咸南	咸北	合計
1922	2	2	4	2	—	3	4	3	1	—	—	3	—	24
1923	3	10	2	6	24	3	103	7	12	4	2	—	—	176
1925	24	15	112	19	22	2	2	1	—	1	—	—	—	193
1930	95	17	122	94	146	61	169	13	2	3	4	—	—	726
1931	54	25	260	84	140	15	77	10	—	1	1	—	—	667
1932	24	2	90	70	35	6	53	14	—	—	6	—	—	300
1933	27	66	166	593	665	77	223	41	13	3	4	1	1	1975

資料：京城日報社，「朝鮮年鑑」1936, pp. 299-300.

무릇 小作爭議의 發展된 過程인 즉 1920年에 一部地域의 農民에 의한 小作料 減免과 運搬料 引上의 要求를 契機로 爆發하였으며 1922年에 24件에 不過하였던 小作爭議가 全國에 波及 擴散되어 1923年에는 176件, 1925年에는 193件의 記錄을 보인 가운데 農民運動의 一

〈表 15〉 小作爭議의 原因

(1925. 10~1932. 12)

道 別 項 目	京畿	忠北	忠南	全北	全南	慶北	慶南	黃海	江原	平南北	咸南北	合計
小作權關係	100	66	688	677	293	94	299	25	2	9	2	2,315
小作物高率	17	7	74	387	78	5	12	1	—	1	—	581
小作物滯納	14	1	81	67	95	41	12	—	—	1	—	313
不作	8	—	17	509	32	4	81	1)	—	—	—	652
小作物增徵	36	1	31	27	71	—	31	5	—	8	—	211
公課 및 肥料代關係	5	1	27	4	16	59	7	6	—	1	—	126
小作物運搬費關係	3	2	1	—	—	3	—	—	—	—	—	15
小作物決定方法	4	—	11	15	—	3	8	1	—	—	—	42
斗稅等特殊關係	2	—	6	—	—	3	—	—	—	—	—	15
小作物不統一	—	—	15	—	—	—	—	—	—	—	—	15
小作物人無償勞動	—	—	11	—	—	—	—	—	—	—	1	12
小作物地開墾費	—	—	12	—	—	—	—	—	—	2	—	14
小作物品質改善	—	—	31	—	—	—	—	—	—	—	—	31
小作物不正量定	3	—	6	1	1	1	1	1	—	1	1	16
生活困難	—	—	35	12	2	1	—	—	—	—	—	50
小作物制度變更	1	—	—	—	—	7	2	—	—	1	—	11
收支不償	—	—	15)	14	1	—	—	—	—	—	—	30
其他	4	1	1	1	9	13	15	7	1	3	—	72
合 計	263	79	1,064	1,721	68	220	463	48	3	27	4	4,524

資料：京城日報社，「朝鮮年鑑」1936, pp. 300-1

環으로 實質化하였으니 그 後의 形式的 爭議의 件數는 그 規模와 原因에 따라서 區區한 樣態로서 消長을 보이었던 것이나 問題의 深刻度는 加重하였음이 分明하였다.

이리하여 小作爭議가 日帝下 植民地 統治下에 農民運動의 先驅를 이루는 劃期的인 主體意識의 進展이 되었고 民族獨立運動의 發展의 契機가 되었다. 함은 1919年の 3·1運動에 連結된 事件이라는 點에 照鑑하여 立證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우기 小作爭議는 1922年에 서울에 結成된 小作物人相助會를 筆頭로 朝鮮農民總同盟 그밖에 各地方에 組織된 小作物人組合이 母體가 되어 그를 實質化하였고 그들이 要求한 内容⁽¹²⁾도 含蓄的인 것이었다. 그 가운데 忠北의 小作物人相助會에서 要求條件으로 提示한 内容을 보면

- 1) 地稅 其他는 全部 地主負擔으로 할 것.
- 2) 小作物는 折半으로 할 것.
- 3) 小作物의 収納方法을 改正할 것.
- 4) 小作物年限을 延長할 것.
- 5) 小作物의 小作物 運搬距離를 短縮할 것.

(12) 朝鮮農會, 「朝鮮農業發達史」(政策篇), p. 199.

- 6) 小作地 收租費의 小作人負擔을 輕減할 것.
 7) 合音 그밖에 小作人管理의 斗稅 및 無償勞動 要求를 廢止할 것.

그리고 1922年 全南의 小作人相助會에서 提示한 要求條件은

- 1) 小作料는 收獲高의 4割로 할 것.
- 2) 地稅公課는 地主의 負擔으로 할 것.
- 3) 小作料의 裁量에는 斗概를 使用할 것.
- 4) 地主는 無償으로 小作人을 使用하지 말 것.
- 5) 1里 以上의 小作料 運搬費는 地主의 負擔으로 할 것.
- 6) 地主는 小作人斗 融和親善을 圖謀하여 小作人을 覆視하지 말 것.
- 7) 小作權을 任意로 移轉하지 말 것.
- 8) 地主는 非常識的 合音을 使用하지 말 것.
- 9) 天災地變에 의한 土地의 復舊費는 地主의 負擔으로 할 것.

또한 1923年에 激甚하였던 小作爭議 가운데 一例를 列舉하여 보면 1923年 10月 21日 慶尚北道 榮州都 豐基의 小作組合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動態는 小作爭議의 積極的 運動 및 階層의 對立運動에 對한 性格의 一面을 裏證하고 있다는 點에서 重要하다 할 수 있다. 即 「豐基勞動共濟會館에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한 바 있었는데 一般會衆은 極度로 繫張하여 今秋에는 期於히 目的을 貫徹하도록 奮鬥努力하고자 더욱 團結을 鞏固하 하기로 盟誓하였다.」⁽¹³⁾

는 것으로 그 決議內容인 즉 1) 地稅는 全部 小作料 5割 以上은 絶對不應할 事 2) 地主가 우신 無理하게 小作權을 移動할 時는 一般小作人은 結束하여 小作權擁護를 主張하고 어찌한 小作人이든지 耕作치 말 것 等의 強硬한 態度의 것이었다.

우리는 마아흐로 이러한 氣勢로 展開된 1920年代 初期의 小作爭議의 性格에 관한 限單純히 地主에 대한 小作條件改善을 위한 戰爭이 아니라 大概는 大衆的 또는 民族的 獨立運動性格의局面에 있었다는 點에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小作爭議는 多分히 農村社會運動인 同時に 民族獨立運動의 意義를 가졌음이 分明하다 할 수 있고 그것은 第 1次 世界大戰 以後에 急激히 膨大된 民族自決思想과 社會意識의一般的發展에 對應한 必然的인 所產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때 小作爭議는 地主에 대한 單純한 小作條件改善을 위한 戰爭이 아니라 大衆的 또는 民族的 獨立運動의 性格을 가졌다는 點에서 그를 特殊化시켜 볼 수 있음이 分明하나 그것은 곧 日帝下 土地調查事業完了와 더불어 本格化된 小作爭議가 1926年의 6·10萬歲

(13) 東亞日報, 1923年 10月 21日字

事件을 고비로 絶頂에 있었고 同時に 激化一路에 있었다는 事實에서 充분히 反證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後 1929年에 나타난 報道에 의하면 바로 小作爭議는 「逐年增加 半年間에 近 400件이고 全北이 第 1位를 占領하여 云云」⁽¹⁴⁾ 함에 있어서 이 點은 더욱 示唆的인 것이 되어 있다고 보자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全北地方이야 말로 日本人 巨大農場(500町 以上)이 가장 多이 集結分布되어 있는 地域이었으며 가장 그들 小作地의 比重이 높은 地域이 되어 있었다. 바로 이 地域에서 小作爭議가 激化되었다는 事實은 곧 小作爭議의 性格인 즉 民族的 獨立運動의 一環으로 實質化된 것이라 할 수 있다.

〈表 15〉 全北地方 韓·日人地主分布 (1930年末)

區 分	30~50 町未滿	50~100町	100~500町	500~ 1,000町	1,000町 以上	地主數	所有面積 (町)
韓 人	119	134	82	4(32)	2(10)	341(4,162)	29,482
日 人	31	38	45	9(27)	10(37)	134(870)	43,154

資料：雜誌「改造」，1935年 11月號。但，()안 數字는 全韓地主數

〈表 16〉 全北道 5個水利組合地區內의 民族別所有關係

年 度	韓 人		日 人		其 他		計	
	人數	面 積(町)	人數	面 積(町)	人數	面 積(町)	人數	面 積(町)
1920	3,141	4,181(39.6)	417	3,674(34.8)	25	2,694(25.6)	3,593	10,549(100.0)
1925	3,263	3,968(28.0)	687	7,011(49.5)	32	3,164(23.5)	3,987	14,143(100.0)

資料：雜誌「改造」，1935年 11月號

모름지기 小作爭議의 顯著化는 그것이 勞動爭議와 連結될 때 그 絶頂에 達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1920年 4月에 組織된 「朝鮮勞動共濟會」라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勞動階層만의 共濟的 團體가 아니라 小農民을 直接參加시킨 間爭的 組織의 것이라는 것이었고 1922年 9月에 開催한 「小作勞動者大會」⁽¹⁵⁾이란 바로 韓國近代化史上 特記할만한 最初의 組織의 小農民大會의 性格의 것이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日帝下 小作爭議는 近代의 勞動運動과 깊이 聯關係를 가짐으로써 勞動爭議에 準한 性格의 것이었으며 社會的으로 自覺된 主體意思를 標榜하고 있었다는 點에서 그의 性格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물론 小作問題의 現實的 條件인 즉 결코 小作料의 高率性에 限定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

(14) 東亞日報, 1929年 5月 17日字;

(15) 1922年 9月 11日字 東亞日報에는 「小作勞動者大會」「조선에서 처음으로 진주에서 개최」라 하여 報道되고 있다.

다. 小作期間의 設定 小作料의 徵收方法 그의 運搬費用, 小作契約의 締結方式등에 대한 不合理性이 얼마든지 指摘되고 있다. 이와 같은 小作條件의 不合理性이 드디어 小作農民으로 하여금 悲鳴을 울리게 하자 이에 대한 社會的 批判의 輿論은 이 땅에 漸次 高潮되었다. 第一次 世界大戰 以後 이 땅의 小作問題는 深刻한 社會問題로서 本格化한 것이며 그후 1930年代의 世界的 恐慌에 휩쓸리게 되자 韓國의 小農 特히 小作農의 困苦는 極度에 達하였으니 小作農의 悲慘은 表現할 수 없을 만큼 深刻한 것이었다. 小作爭議의 激化를 보게 됨도 이와 같은 不可避한 事情의 背景 때문이었다. 바야흐로 「朝鮮의 小作制는 世界에 類例 없을 만큼 不合理를 極한 것으로서 農民은 地主와 合同을 위하여 不斷한 勝歎誅求 밑에 남김 없이 挪取를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總督府의 指導獎勵下 諸般의 農事改良은 着着 實效를 이룸으로써 年年의 移出은 日本本國의 米作生產을 壓迫하고 있는 過程임에도 不拘하고 그 產業의 生產者인 小作農民은 僅僅 收穫後 2~3個月을 지탱 할 收入이 있을 畏 早春解雪을 기다리지 못하여 山野에 나아가 草根木皮로서 그 餘命을 維持하는 慘狀에 놓여 있다. 지금 人類가 如何히 尊待를 받는다 할지라도 어느 程度의 不屈向上의 精神이 있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朝鮮의 마을에 小作爭議의 烽火가 일어나는 것을 防止할 수 있으리오」。⁽¹⁶⁾

위의 一聯의 事實로부터 日帝下 土地調查事業 以後의 植民地農業 下에서 高率小作料 問題의 矛盾性은 거기에 뚜렷이 展開된 客觀的인 條件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小作問題의 發生은 그러한 客觀的 矛盾의 實在만으로서 露出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例전대 元來 「社會問題로서의 小作問題라는 것은 小作關係의 決定變更에 관하여 地主 小作人間에 小作爭議가 頻繁하고 또한 그 爭議가 顯著히 階層對立의 色彩를 띠게 될 경우를 말하는 것」⁽¹⁷⁾이 라는데서 實質的인 意味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이 점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農業問題의 成立이 그 客觀的 條件만에 의하여 具體化하지 않고 어떠한 主體的 意識을 要求함을 우리에게 反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 主體的 條件의 本性이 반드시 階層對立意識에 限定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時代와 場所에 따라서 斷定의 아닐 뿐이지 그의 本性은 그대로 實質化되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리하여 小作爭議는 小作問題의 社會的 露骨化 즉 主體的인 問題意識의 成立을 反映한 것이라 하겠거니와 그것은 當初 民族意識을 觸發하였고 漸次 階層 對立抗爭 즉 小作人運動의 方向으로 擴大됨으로써 日帝下 植民地政策에 對決한 主體性의 進化過程을 表現하였던 하나의 先導的인 例가 되었다는데 그의 基本性格을 찾아볼 수 있다.

더우이 小作爭議는 戰爭的인 樣相으로 表面化하였으며 當時에 當局者 스스로 指目하듯이

(16) 澤村 康, 「農業政策」上卷 1932, p. 277.

(17) 澤村 康, 「農業政策」上卷 1932, p. 357.

近代的 社會運動의 性格을 如實히 露出하고 있었다. 即

「韓日合併後 地主・小作人の 關係는 時勢의 推移와 經濟事情의 變遷과 아울러 漸次 變遷하여 小作權의 移動 小作條件의 維持改定 等의 問題를 中心으로 小作爭議의 惹起가 있 었던 것이나 1920年頃부터는 1次大戰後 一般社會思想의 變遷影響도 있어서 드디어 그것은 農村社會에 있어서 恒常的 現象이 되어 있었다」。⁽¹⁸⁾

한편 그 가운데 小作爭議의 發動인즉

「從來에는 社會思想家의 指導에 의한 爭議가 多大數를 占하였던 것이나 오늘날은 거의 小作人 自身에 依한 爭議에 轉化하고 있는 傾向을 우리는 看過하기 어려운 일이다. 云云」⁽¹⁹⁾ 이라는 內容에서 小作爭議인 즉 1次大戰後 急激히 膨大된 民族自決思想과 社會意識의 一般的 發展에 對應한 社會運動임과 同時に 近代的인 農村社會運動의 一環으로서 農民의 福祉向上을 追求하기 위한 運動이고 農民의 自律性에 立脚한 農民自主運動의 性格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된다.

VI. 結 言

첫째 日帝下 土地調查事業 以後의 小作爭議는 近代的인 農村社會運動의 一環으로서 農民의 福祉向上을 追求하기 위한 農民運動이었으며 同時に 農民의 自律性에 立脚한 農民自主運動의 性格이었다는 點에서 그의 特徵을 찾아 볼 수 있다.

둘째 日帝下 土地調查事業 以後의 小作爭議는 封建制下의 農民抗租運動이나 그 밖의 大衆의 抵抗運動과는 그의 生成의 本質을 달리하고 있다. 즉 日帝下 土地調查事業 以後의 小作問題는 高率小作制의 進行을 보는 가운데 開發된 階層意識을 갖는局面의 것으로서 階層 對立運動으로서의 發展의 性格을 갖는 것이다.

세째 日帝下 土地調查事業 以後의 小作爭議는 近代的인 勞動運動과 깊이 聯關을 가짐으로써 勞動爭議에 準한 性格을 띠게 되었던 것이며 社會的으로 自覺된 主體的 意思를 標榜하고 있었다는 點에 그의 基本性格을 찾아 볼 수 있다.

넷째 日帝下 土地調查事業 以後에 展開된 이 땅의 小作爭議는 前段階에 있었던 小作農의 地主에 대한 散在的인 消極的인 呼訴나 陳情과는 달리 分明히 行動的 團結力を 誇示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弊勢階層의 反抗이란 色彩를 濃厚하게 띤 近代的 屬性이며 결코 封建時代에 볼 수 있었던 農民騷搖 그것과는 判異한 性格의 것이었다.

(18) 朝鮮總督府 農林局, 「朝鮮農地年報」第一輯 1940, p.5.

(19) 津曲藏之丞, 「朝鮮に於ける小作問題の發展過程」(京城帝大法文學會, 「朝鮮經濟の研究」1929, 所收), p.426.

다섯째 小作爭議는 第 1 次 世界大戰後 3·1運動에 連繫되고 後續된 事件이며 3·1運動을
契機로 當時 急激히 膨大된 民族自決思想과 社會意識의 一般的 發展에 대한 必然的 所產이
였다는 點에서 小作爭議는 곧 民族的 獨立運動의 性格을 갖게 된 것이다.

여섯째 小作爭議의 問題意識은 封建的 小作關係에 대한 徹底한 變革을 含蓄하는 同時に
近代的 土地關係에 대한 強力한 批判을 스스로 示唆하는 性格의 것이다.

끝으로 日帝下 土地調查事業 以後의 小作爭議는 地主에 대한 小作條件 改善을 위한 單純
한 戰爭이 아니라 大衆的 또는 集團的인 運動의 性格의 것이었다. 그리하여 小作爭議는 農
民運動의 先驅를 이루는 劇期的인 主體意識의 進展으로서 農村社會運動의 同時に 民族獨立
運動의 性格을 갖게 되었다.